

大學院教育 強化의 具體的 方案

- ◇ 이 研究論文은 1984년도 文教部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에 ◇
- ◇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研究陣은 서울大 大學院長 金曾漢 ◇
- ◇ 教授 外 4人(金完鎮, 宋熙星, 朴贊雄, 黃迪仁 教授)으로 ◇
- ◇ 서 연구의 범위는 서울大 大學院의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
- ◇ 타 대학의 大學院 運營에도 크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
- ◇ 본다.<編輯者 註> ◇

I. 研究의 目的

이제까지 大學院教育의 強化 및 質的 向上을 위해 數次에 걸쳐 綜合的인 研究와 細分化된 研究가 있었다. 그 代表的인 것이 1977년도의「서울大學校 綜合化에 따른 大學院強化策研究報告」와 1979년도의「大學院重點育成研究結果報告書」이다. 이를 연구에서 현재의 大學院 運營의 實態가 어떠하여 그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改善方案은 무엇인가에 관해 상당히 주의가 환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의 指摘·提示에 비해 그 改善의 정도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점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 理由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財政的인 與件이다. 즉 諸算의 絶對額은 고정시킨 채 단지 大學과 大學院에의 配定比率의 조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대학의 一次의인 關心事が 大學問題의 現實的인 時急性과 比重 때문에 學部에 치우친 感이 없지 않아, 大學院의 山積해 있는 當面課題의 實質的인 중요성이 가려워져 있었고, 대학

원이 학부와는 달리 大衆教育機關이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一般人們의 關心의 소홀 등도 역시 작용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反復의 으로 問題를 제기하기만 하고 實際의 改善·發展되지 않는 現狀態에만 머물러 있고, 또한 看過되어지기에는 변화되는 주변상황이 너무도 時急하다. 궁극적으로 先進國으로의 跳躍과 福祉國家建設을 목적으로 하여 國際社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高度의 專門知識人을 배출할 高等教育機關이 必須의이며, 이제 더 이상 專門人の 供給을 無計劃하게 外國留學에만 의존할 수 없고 自給自足해야 한다는 原則論의 理由 외에 1980년도의 教育改革措置 중 소위 卒業定員制 實施에 의해 올해(1985년) 그 첫 卒業生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大學院課程(碩士課程)에의 전학을 단지 學問研究에 뜻을 둔 學生뿐 아니라 有利한 條件을 가진 職業을 백하기를 바라는 학생도 원하게 되어 이제는 大學院 碩士課程이 거의 必須의 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졌고, 또한 大學院進學에 각종 特惠가 수반됨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이 學部生들의 關心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狀況變化는 당연히 大學院 教育制度의 정비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 점은 1985학년도 大學院 碩士課程 入試의 競爭率과 碩士學位 取得 希望者와 그 取得者의 增加現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이제까지 행해진 연구들에서 제시한 각종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에서 그 時急性和 重要性에 비추어 보아 이것만은 改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建議案을 작성하였다. 그 중에는 法令의 改正이나 學則의 改正으로 그 實現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政策當局의 巨視的인 眼目에 입각한 政策轉換이나 論算編成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해결가능한 것도 있음은 不可避한 현실이라 하겠다.

畢竟하지만 本稿에서는 本研究規模 및 性格上 細分化된 考察은 피하고, 그간에 이미 이루어진 研究를 土臺로 하고, 여기에다 研究委員들의 追加的인 調查活動에 기한 成果를 덧붙여서 建議 中心으로 本論部分을 각종 入試制度, 教科課程 및 研究組織, 論文提出 및 審查, 誘引體制, 그리고 이것들의 基本的인 前題가 될 管理組織의 強化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 研究가 그 所期의 成果를 거둘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II. 各種 試験制度

1. 入學試験

가. 研究의 範囲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의 研究에서 入試全般을 관리하도록 하는 入試管理委員會의 설치라든지 入試科目과 그 과목相互間의 配點調整 등이 더불어서 論議되어 왔으나, 이 研究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口述考査의 比重 強化와 學部成績의 反映 문제만을 검토하였다.

나. 口述考査의 比重 強化

현재 행해지고 있는 口述考査는 施行過程에서 그 形式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學問研究의 단계와 전문성에 비추어 보아 大學入試에 있어서보다 大學院入試에 있어서의 口述考査의 比重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大學院入試에 있어서도 大學入試에서의 口述考査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解決方案으로서는 첫째, 現行 大學

入試에 있어서와 같이 3~4단계(예컨대 A, B, C, D)의 等級을 정해서 평기고사의 점수와 관계없이 단지 當落만을 이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과, 둘째 그 等級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평기고사 점수와 합계해서 當落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前者の 方法은 현행 大學院入試制度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나, 口述考査方式의 形式性과 實質上 口述考査만으로 낙방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實質的으로는 口述考査의 成績이 反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配點基準의 客觀化와 科學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先決條件으로 하여 後者の 方法이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口述考査의 刑式性을 克服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구체적인 配點基準과 反映比率은 各科의 特성을 살려서 융통성 있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學部成績의 反映

이 문제에 대한 解決방안으로서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大學院 應試資格을 學部專攻에 의해 제한하자는 것, 예컨대 大學院 法學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法學을 專攻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大學入試가 대부분 系列別이 아니라 科別로 행해지고 있고, 教養課程이 그 本來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現實에서 大學院 進學時에 專攻의 變更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 方法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學部成績을 직접 大學院入試에 算入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全國 大學의 學點의 기준이 서로 相異하고, 또한 教授 개개인의 教量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學點이 좋은 편이고 어느 학교에서는 나쁜 편이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不公平할 수 있으므로 단지 應試資格條件으로 全學年 平均平點의 最低限을 정해서 (예컨대 B학점 이상이라든지, 또는 전체의 20% 이내의 성적이라든지) 이에 미달하는 학생은 아예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人文·社會系 大學院과는 달리 自然系 大學院에서는 教授數 不足을 補完하기 위한 助教確保 등의 이

유로 全 大學院에 一括的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우선 人文·社會系 大學院에서 위 方案을 실시해 보고 이어 전체 大學院課程에 이를 擴大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방안의 補完策으로 大學院進學 이후 學部時에 他科를 전공했던 학생에게는 先履修學點을 부여해서 學部에서 실시하는 그 專攻의 科目을 수강하도록 義務化하는 方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大學院課程은 학부에서의 基礎·必須科目의 受講을 전제로 해서 編成되어 있는데 반해, 學部專攻과 大學院專攻이 不一致하는 학생은 자연히 그 專攻科目의 受講機會가 없었거나 적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전공에 관한 基礎的인 知識이 缺如되어 있을 가능성성이 비교적 높아질 것이다.

2. 論文提出 資格試驗

가. 研究의 範圍

이에 관해서는 이미 1981년과 1982년에 「大學院 學位論文提出 資格考查 外國語科目 試験 改善方案研究」¹⁾와 「大學院 各種 試験制度의 改善方案」²⁾에 의해 상세하고 깊은 연구가 행해져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을 제안하기로 한다.

나. 外國語試験의 頻度數 縮少

현재에는 入學試験에서 外國語試験을 치르고 이에 관계없이 論文提出 전에 論文提出資格 外國語試験에 통과해야 하며 다시 博士課程의 入學 및 論文提出資格 外國語試験을 또 한번 치룰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창 論文準備에 여념이 없는 시기에 專攻에 직접적인關係가 없는 外國語試験을 보아야 하며, 不合格時에는 論文提出이 좌절되는 不運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예컨대 碩士課程에서는 18학점을 履修해야 資格試験의 應試資格이 주어지므로 論文을 本格의으로 준비하기 전에 미리 위 試

驗을 준비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결국 本末이顛倒되어 버린 느낌이다. 따라서 語學試験의 회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즉 入學時의 外國語試験만으로 外國語 實力評價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外國語試験 成績에 等級을 정하여 그 일정 등급에 未達하는 자에게만 資格試験을 의무화하는 方案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그 資格試験의 施行時期도 固定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補完策이 더불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語學研究所가 주관해서 주기적으로(2 달 또는 3 달에 1 회 정도) 外國語試験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教科課程 및 研究組織

1. 教科課程上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가. 各科의 裁量權 強化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예로서 博士課程의 履修學點 60학점이 單科大學間에 어느 쪽에서는 적다는 의견이 또 어느 쪽(특히 自然系의 경우)에서는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統一的으로 方向을 정할 수 없었다. 결국一律의인 적용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裁量權을 부여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統一的으로 인정되고 있는 研究學點 2학점도 그저 형식적으로 受講申請만 하면 취득케 할 것이 아니라 論文指導成績을 기준으로 그 取得與否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나. 學部科目的 受講 可能性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 '先履修學點' 제도와 함께一般的으로 大學院生에게 소정 범위 내에서 學部科目的 受講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위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教科目的 增設

1) 문교부 1981년도 연구조성비 보고논문, 연구책임자 金韓坤, 연구위원 趙明翰, 李廷政, 朴南植,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 문교부 1980년도 연구조성비 보고논문, 연구책임자 權肅一, 李康淑, 李基俊, 鄭鍾旭, 서울대학교.

法科大學의 경우에는 博士課程의 取得學點數 60학점 내에는 硕士課程의 24학점이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硕·博士課程의 전공은 일치하기 때문에 硕士課程에서 專攻科目을 많이 수강했을 경우에 정작 博士課程에서는 重複을 피하기 위해 非專攻科目的 受講으로 잔여 學點을 이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不合理하다는 이유에서 疾科의 增設과 必須科目을 設定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 研究組織上의 문제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의 수차례 결친 研究와 建議에 의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어 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教授의 責任時間의 過多이다. 大學院教育의 質的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教授 개개인의 不斷한 研究와 이러한 研究雰圍氣助成이 必須的인 것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大學의 現實에서 教授에게 研究外의 人負擔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研究委員들 모두가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연구학점 부여를 위한 大學生 指導時間은 教授責任時間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醫科大學의 경우

의과대학은 다른 單科大學과 달리 學部卒業後의 教育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專門醫養成을 목표로 하는 修鍊課程과 研究能力의 培養을 목표로 하는 大學院課程이 그것이다. 물론 醫學部分에서도 研究遂行能力을 갖춘 高級醫療人의 養成이 타분야 이상으로 요망되며, 醫學分野에서 大學院課程의 存在가 필요한 것도 그 理由이다. 그러나 獨創的인 研究能力의 의료인 전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각급 醫療機關에 종사할 사람은 그 기관의 기능에 알맞을 정도의 知識과 技術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多數의 醫科大學의 卒業生들은 실제로 臨床修鍊醫課程과 學位課程을 공히 履修하기를 원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醴學은 解放前에는 日本式이었고 그 후에는 美國의 영향을 받아왔다. 美國에서는 學部課程을 大

學院으로 看做하여 졸업하면 “博士”라고 번역할 수 있는 M. D. (Doctor of Medicine)를 수여하며 새삼 Ph.D. 課程을 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또한 M.D. 와 Ph.D. 두 종류의 學位를 同時に 취득할 수 있는 混合課程도 설치되어 있으나 少數만이 이를 이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두課程을 둔 근본취지는 卒業生으로 하여금 그 중 하나를 맥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臨床에서는 專門醫課程을 주로 맡게 하고 學位課程은 普遍的 經歷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學位를 필요로 하게 된 까닭은 傳統적으로 “博士”라는 稱號가 學問과 技術의 完璧한 境地를 뜻하는 것으로 大衆에 그릇되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의 이유가 그 주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臨床과 研究를 併行함으로 인한 무리가 뒤따랐다. 대부분의 學生들의 경우 診療에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不要不急한 學位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은 國家社會의 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學位과정은 研究와 後進教育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本 研究의 研究委員들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案이 제시되었다. 첫째 그 施行可能與否가 논란되거나 臨床醫學으로는 學位를 取得할 수 없게 하고 基礎醫學에만 限定하자는 의견이다. 둘째로는 아예 醴科大學에서는 硕士課程을 없애고 博士課程만을 두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他科出身의 學部生에게 硕士學位課程을 履修할 기회를 剝奪하는 결과가 된다는 理由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결국 現實的으로 행해지고 있듯이 現行制度와는 별도로 專門醫課程과 硕士課程을 통합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博士課程을 두어 전문의과정이 끝난 후에 원하는 학생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現實의 으로 타당한 方案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定員令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IV. 論文提出 및 審査

1. 基本的인 方向

간단히 표현하자면 論文題目的 設定에서부터

終審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學生과 指導教授가 協議해야 함을 制度의으로 보장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現實을 살펴보면 간혹 指導教授가 자신의 指導學生이 누구인지를 中間要旨發表 때에 가서 실지어는 終審에 가서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저히 容納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위의 기본적인 方向을 이탈함으로 인해 不實한 論文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終審期日이 다 되어서 草稿를 제출하게 되면 審查委員이 짧은 기간내에 많은 分量의 論文을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終審期日이 다 되어서 修正指導를 한다는 것은 通過를 保留시키는 것이 되어 人情上 곤란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려한 현실 떼문에 論文의 질이 전반적으로 下落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指導教授의 名譽도 실추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學生과 教授가 접촉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할 것이다. 人文大學에서 大學院生을 대상으로 실시한 調査에서 論文題目을 指導教授로부터 부여받은 학생이 거의 없었고, 論文準備過程에서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한 학생이 50%에도 未達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위에서 주장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解決방안

가. 論文審查委員會의 早期構成

가장 필수적인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논문심사위원회를 現在보다 빨리 구성하자는 案이다. 즉 현재는 論文提出學期 前 1학기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좀더 앞당기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論文題目的 선정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위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고, 지도 교수와의 주기적인 協議를 義務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실천적인 해결을 위해 學位授與規定向 論文計劃書의 제출에서 終審에 이르기까지의 節次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各科가 그 特性에 맞게 具體的인 細則을 정하도록 하는데, 그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한 作成을 義務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部分적으로 몇몇 개의 科에서 사실상 실

시하고 있으나, 學則에 이를 의무화시키게 되면, 그 施行 및 遵守를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研究指導費의 現實化

論文指導의 活性화를 위해서 研究指導費의 現實化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재정적인 것이기 때문에豫算에 관련되어 있어 現實的인 改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外部教授의 경우 交通費 및 宿泊費에도 미달되는 研究指導費는 같은 水準의 他 기관에 비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外部教授審查委員 선정규정의 기능 규제화

현재 義務規定으로 되어 있는 外部教授의 必要的 審查委員選定規定은 각 科別로 또한 論文의 主題別로 융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任意規定으로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醫科大學의 改善案

論文指導教授團의 운영을 중심으로 學位論文作成 및 審查過程의改善에 관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案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구성

碩士 : 專攻科目 教授 2명 (1명은 指導教授)
専攻 이외의 教授 1명 (研究主題와 관련이 있는 教授)

合 3명

博士 : 指導教授 1명

専攻科目 教授 2명

専攻科目 이외의 教授 1명

他校 教授 1명

合 5명

委員選定 : 學生, 指導教授 및 學事委員會와의 相談下에 결정한다. 選定時期는 碩士는 論文發表會 30일 전에, 博士는 thesis proposal 30일 전에 결정하여 大學院에通告한다.

(2) 指導教授選定

碩士 : 入學後 1학기 후에 지도교수를 정한다.

博士 : 同一 專攻科目에서 碩士를 이수한 者는 入學後 곧 指導教授를 정할 수 있으나 博士課程에서 전공과목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1학기 후에 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 論文作成 및 審查

가) 硕士： 현재 本校 대학원에서 시행되는 방법

① 좌장단 구성

學事委員會가 專攻主任敎授 및 指導敎授의 추천으로 구성

② 좌장단 主體로 심사위원 앞에서 合同으로 發表會를 終審 1개월 전에 實施한다. 이를 1審으로 한다.

③ 論文發表會에서 指摘되고 좌장단에 의하여 報告된 사항의 修正·補完指示의 履行을 심사위원은 確認하여야 하며 이를 2審으로 한다. 論文의 修正·補完의 정도에 따라 第2審을 終審으로 할 수도 있다.

나) 博士

① 博士課程 1년 후(2학기 履修) Thesis Proposal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얻어진 기본적인 研究結果를 發表하고 이에 준하여 앞으로 진행할 實驗計劃과 研究範圍를 제시한다.

② Proposal 후 적어도 6개월 후에 初審을 가지며 이때도 學生은 심사위원 앞에서 研究進行狀況을 發表하고 특히 Proposal 때 제시하였던 實驗計劃의 履修與否를 확인한다.

③ 初審後 2개월 후에 中審을 가진다. 이때 初審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한다.

④ 終審은 冠岳캠퍼스에서 가진다.

(4) 기타

가) 審查委員會는 每審查過程에서 토의되었던 사항을 기록하여 學事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사는 가급적 特定 場所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 심사 2週前에 테스트를 각 심사위원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라) 每審查 때마다 學生이 심사위원에게 직접 發表한다.

3. 音·美大의 경우

모든 大學院課程에서 반드시 學位取得을 위해 論文提出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最善策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예로서 藝能系 大學院 중 音大에서는 作曲이나 演奏로써, 美大에서는 展示會로써 論文提出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령 音樂大學의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현재 「音樂學論文」이라는 것을 누구나 쓰고 있다. 그런데 作曲이나 演奏는 '學'일 수는 없다. 現行의 「音樂學 碩士論文」은 卒業을 위해서 누구나 써야 하는데 이것은 音樂學, 音樂歷史學, 音樂教育學 등을 專攻하는 學生이 써야 할 論文임에도 불구하고 作曲·演奏 專攻의 학생들도 碩士學位取得을 위해 써야 한다.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소위 'Option' 계도의 채택을 이 분야에서부터라도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즉 指導敎授 및 大學院委員會의 統制下에 위와 같은 論文提出에 대신해서 연주회나 전시회 또는 追加學點의 履修 또는 口述試驗 등의 代案을 마련해서 위의 統制下에 學生들에게 선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V. 誘因體制

1. 基本的인 方向

碩·博士課程이 學部課程과는 달리 高度의 專門人를 양성하고 장차 後進의 教育과 學問發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도 결실히 요청되는 것이 研究에만 專念할 수 있는 제반 雾靄氣를 造成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碩·博士課程의 學生들은 社會的으로 보아 더 이상 經濟的으로 他에 依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補助의 필요성은 增大되는 것이다. 즉 그 補助의 정도가 단지 學費에만 한정될 수 없고 어느 정도生活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人文大學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A.와 R.A.의 장학혜택을 받는 一部 학생 이외에는 대부분이 自費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累次豫算과 直結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文敎部를 중심으로 하는 政府當局의 문제의 정확한 인식에 기초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解決方案

가. 大學의 既存 物的・人的 資源 活用方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인식의 변화이겠지만, 예산문제를 结付시키지 않고 약간의 정책의 변화로써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自然系의 경우에 既存의 研究施設 및 優秀人力을 적절히 活用하자는 의견이다. 물론 大學의 人的・物的 資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研究國地를 건설한 예가 대부분이었겠지만 사실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二重의 중복된 投資를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企業과 大學을 連結시켜서相互補完을 할 수 있는 方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장학제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大學院 全般의 研究意慾 고취와 活性化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나. 奨學制度擴充

역시 절차적인 國庫補助에 의한 奖學惠澤의 擴大가 요망된다. 예컨대, 研究獎學金을 증설한다든지, 大學院補助基金을 설치한다든지 助教獎學制度를 확대하는 등의 方案을 말한다.

다. 研究環境의 改善

특히 人文大學을 위시한 人文・社會系 大學院에 있어서는 研究室의 數 및 面積의 不足現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人文大學의 設問調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人當 研究室 面積이 1~5m²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과 法科大學의 경우 大學院 碩士과정 한 學年의 人員數가 100명에 가까운 때 비해 研究室(敎授의 個人研究室은 제외)은 고작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위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제도 확충과 동시에 이 不足現狀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당장의改善이 어렵다면 최소한 博士課程 學生의 研究室增設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管理組織의 強化

1. 必要性

사실상 大學院教育이 그 特性을 살리지 못하고 簿報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理由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우선 그러한 計劃을 獨自의으로 수립하고, 執行해 나갈 관리조직의 未備를 들지 않을 수 없다. 大學院의 現況과 문제점을 항상 파악하고 大學과는 별도로 创意性 있게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體系있게 執行해 나갈 수 있는 組織이 없이 大學院教育의 強化方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칫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大學校 設置令 第9條에 의하면 現行 大學院固有의 組織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大學院長 1人과 行政主事 1人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모든 管理行政은 他部處에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大學院의 特殊性을 고려할 여지가 적어지고, 政策立案에 있어서 항상 뒷전에 처지기 쉽다. 또한 大學과 ount이 구별되는 研究機能에 이르러서는 그 管理體系가 거의 全無狀態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결국 현재 大學院長室과 行政室에서 實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寶印의 管守와 大學院委員會의 開催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大學院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면하게 될 課題들이 이미 1970년대의 教育與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增大하고 있는 現狀況下에서 그러한 形式的인 組織만으로 위 과제에 對處에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本 研究의 研究委員全員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개선이 가장 우선적이고 時急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2. 改善方案

가. 基本方向

우선 大學院을 서울大學校의 구성단위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教育法(제 109, 127, 129조)에 따라서 大學院 및 大學院長의 職이 종합대학교의 必須의인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大學校 設置令에 의한 實제 施行過程에서 大學院長이 大學院 固有組織의 指揮系統의 長으로서가 아니라 大學院委員會의 長으로서 大學院教育 全般에 관해 諮問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機能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직의 不在로 인해 大學院과 學部가 잘 連結되지 않고 결국 責任所在가 不分明해지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나. 學則의 分離

서울大學校의 學則 中에서 大學院 관계 學則 은 이를 분리해서 獨自의인 體系로 再編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우선 大學院의 職務 와 大學院長의 權限을 明示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學則의 全面的인 改正 補完이 요 청될 것이다.

다. 大學院長의 補助機關 및 主任教授制設置
大學院長의 職務를 보좌할 수 있는 副院長 1~2人의 職을 新設하고 각 單科大學에 大學院 業務를 책임지고 尋擔해 나갈 主任教授를 두어야 할 것이다(현재, 公式的인 職位는 아니지만 사실상 主任教授의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있으나, 이는 文字 그대로 사실상의 職位이므로 責任歸屬이 不分明하고 그 직위에 따른 禮遇가 없기 때문에 正常의in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既存의 行政體系를 유지하여 能率을 살리면서 각 單科大學別로 責任지고 創意性 있게 大學院 固有業務인 研究를主管할 수 있는 관리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라. 大學院委員會의 機能強化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大學院委員會의 기능을 강화하여 研究機能을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I. 結語

이 研究는 이제까지의 數次에 걸친 研究報告에 서와 같이 大學院教育 強化를 위한 基本方向 設定과 특히 時急하고 重要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문제점 부각 및 그 解決方案의 제시를 중심으로 展開되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政策當局의 狀況을 바르 보는 眼目과 그에 基한 과감한 조치임은 두말할 필요 없이 自明한 것이다. 社會全體의in 觀點에서 볼 때 大學院教育의 強化는 高度專門人力의 自給自足 및 國際競爭力を 가진 大學으로의 發展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대학을 學間研究의 本堂으로 성숙시킬 것이다. 經濟의in 觀點에서 볼 때 大學院教育의 強化는 무분별한 外國留學 選好意識을 블식하고, 그

에 따라 外貨節減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附隨의in 產物에 불과할 것이고, 大學院 本然의 設置目的을 想起한다면, 大學院教育이 장차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明白해질 것이다.

大學院教育의 強化라는 것은 결국 教育의 質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것을 教授의立場에서 보면 研究雰圍氣의 造成, 즉 責任時間의 短縮, 研究組織의 정비 등일 것이고, 學生의 立場에서 보면 將學制度의 擴充일 것이다(그간에 大學院進學의誘引策으로 學論되어 왔던 兵役特惠는 3년전부터 施行되고 있는 特殊專門要員選拔試驗에 의한 短期服務策의 실시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러한 基本認識에 기초하여 本研究에서는 우선 入試에서는 口述考叡成績의 實質的反映 및 學部成績의 參酌을, 論文提出資格 外國語試驗에 있어서는 그 시행 회수의 減縮 및 語學研究所主管의 週期的 實施를, 教科課程의 編成에서는 大學本部로부터 각 科에게 科의 特性을考慮할 수 있도록 상당한 裁量權을 委任할 것을, 그리고 研究組織의 정비에서는 教授責任時間의 감축을 提案하여, 論文의 作成 및 提出過程을 審查委員會가 始終 엄격히 統制하여 그 適格性을 심사하도록 現行 學位授與規定의 施行細則에 의무적인 규정을 둘 것이다, 當학제도의擴充을 위해서는 우선 正確한 現實認識에 기초한 國庫에 의한 財政的補助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政策의으로 大學의 優秀한 人的資源과 既存의 物的施設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과 企業을 連結시켜相互補完發展을 도모함으로써 그 附隨의in 效果로서 奨學制度의擴充方案을 探索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方案을 計劃하고 獨自의in 責任을 지고 執行해 나갈 管理組織의 정비·강화야말로 가장 優先的으로 推進시켜야 할 과제임은 當然할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뿐 아니라 그간의 여러 研究에서 지적·제시된 문제점 및 그改善方案을 거듭 강조하며, 文敎當局의 異기적인 政策轉換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